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

발의연월일 : 2008. 6. 17.

발의자 : 윤석용 · 임두성 · 김희철 · 유기준 · 고승덕 · 김성곤 · 김성수 · 정양석 · 진수희 · 김소남 · 조원진 · 이정선 · 이범래 · 황영철 · 임동규 · 김동성 · 김총환 · 조영택 · 박보환 · 박은수 · 윤상현 · 김태환 의원(22인)

제안이유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세금인상액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불안정하게 운용되고 있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2009년 폐지 계획으로 인해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더불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적 접근권 및 생존권을 제한하고 있음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와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

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함(안 제106조의8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8(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석유가스 중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액화석유가스”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대



-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 ② 장애인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카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카드”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 ③ 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차량에 사용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장애인은 면세유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장애인이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1. 당해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면제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제세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 및 관리절차, 감면세액·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8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세금인상액 지원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불안정하게 운용되고 있고, 이 또한 예산부족을 이유로 2009년 폐지 계획으로 인해 고유가로 인한 강한 경제적 압박과 더불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적 접근권 및 생존권을 제한하고 있음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와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8을 신설하고자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법제업무운용규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동 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에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제안

된 것으로서, 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에 있어서는 종전과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 원 미만”인 비용추계 미점부사유에 해

당한다고 할 것임

4.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 황진영
 분석관 연락처 02-2070-311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신 설)</p>	<p>제106조의8(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석유가스 중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액화석유가스”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p> <p>② 장애인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카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카드”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p> <p>③ 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차량에 사용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p> <p>④ 장애인은 면세유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장애인이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p> <p>1. 당해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면제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제세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 및 관리절차, 감면세액·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